교통재해급여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 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 은 "주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읍니다.

③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로 합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⑤ 제 2조 제 1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달하면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⑥ 주계약이 해지 (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교통사고" (이하 "교통재해" 라 합니다)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失踪宣告) 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것으로 인정하는 때

2. 보험기간안에 별표2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정보험금표

사망 및 장해급수	약정보험금	
1. 특약기간중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2. 특약기간중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급여금)	1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 70%
	3급	" 50%
	4급	" 30%
	5급	" 15%
	6급	" 10%

② 제 1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 2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 2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3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3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⑤ 사망 및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로 합니다.

제 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 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6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猶豫期間)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 1항과 제 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復活)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 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9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效力喪失)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제 3조 제 2항, 제 4조, 제 6조, 제10조 제 3항, 제11조 제 1항) 에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背書) 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9조 제 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주계약약관 및 단체할인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할인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할인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기간 10 년
납입기간 5 년, 월납기준

* 남자 *

구분 \ 경과기간	1 개월	6 개월	1년	3년	5년	7년	10 년
납입보험료	100	600	1,200	3,600	6,000	6,000	6,000
해약환급금	30	180	350	1,140	2,050	1,320	0

* 여자 *

구분 \ 경과기간	1 개월	6 개월	1년	3년	5년	7년	10 년
납입보험료	30	180	360	1,080	1,800	1,800	1,800
해약환급금	10	70	140	460	820	530	0

(별표 1)

대 상 이 되 는 불 의 의 교 통 사 고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 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 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체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계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 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 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 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 급의 5부터 11 까지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6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2)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몸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 손가락의 장해 "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 발가락의 장해 "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 급의 5,6,7,8,9, 제2 급의 1,2,3, 제3 급의 8 또는 제4 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한다.